

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갖춘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신기술의 사업화 및 기업 당면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임.

나.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형 소·부·장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킹이 요구되는 바,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8조, 제9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2) 필요성 : 기술혁신 기업 선정, 사업 관리, 컨설팅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각종 기업지원사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업무 전반

- 1) 사업세부계획 수립,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, 대상기업 선정
- 2) 선정평가, 기업 간담회 실시, 지원금 지급 등 사업추진 전반
- 3) 기업 만족도 및 사업성과 조사, 후속 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2월 ~ 12월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9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| 인건비 | 간접비 | 사업비 | 비고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900 | 180 | 90 | 630 | |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3. 부서의견

-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8조, 제9조
- 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1.1.일 시행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

제8조(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)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,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창업보육센터, 시제품생산공장, 산업기술정보센터, 지식재산센터, 국방벤처센터, 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, 예스구미캠퍼스 등 운영
2.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
3.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
4. 나노산업, 첨단산업, 신성장동력산업,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관련사업 추진)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위탁 시 사업
운영으로 인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는 2025년 참여인원의 2025년 1월 기준 대표단가의 평균값으로
산정하였음

나. 사업비는 세부 지원항목에 따른 차등지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| 구분 | | 연도 | | | | | 합계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|
| 세입 | ○ 인건비 | 180 | 180 | 180 | 180 | 180 | 900 |
| | ○ 간접비 | 90 | 90 | 90 | 90 | 90 | 450 |
| | ○ 사업비 | 630 | 630 | 630 | 630 | 630 | 3,150 |
| | 계 | 900 | 900 | 900 | 900 | 900 | 4,500 |

4. 재원조달 방안

| 구분 | | 연도 | | | | | 합계 |
|-----|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|
| 국 비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도 비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시 비 | | 900 | 900 | 900 | 900 | 900 | 4,500 |
| 민 간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 타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합 계 | | 900 | 900 | 900 | 900 | 900 | 4,500 |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이규상(☎480-613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| 구 분 | 금액(천원) | 산 출 근 거 |
|-------|---------|---|
| 합 계 | 900,000 | |
| 인 건 비 | 180,000 | · 참여직원 인건비 30,000천원×6명 ≒ 180,000천원 ※ 2025년 대표단가(차등)×참여기간(11개월)×참여율(차등) |
| 간 접 비 | 90,000 | · 기관 공통경비 90,000천원 |
| 사 업 비 | 630,000 | · 프로그램지원비 589,000천원 · 전문가활용비, 컨설팅 지원비 등 17,500천원 · 여비, 사무용품비 등 5,500천원 · 연구수당 18,000천원 |

| 소 관 부 서 | | 기업지원과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과 장 | 권 미 영 |
| | 팀 장 | 공 민 정 |
| | 담 당 자 | 이 규 상 (480-6134) |